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277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온라인 마약류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3

I. 개요

1.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27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선민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11. 5.
- (3) 회 부 일 : 2024. 11.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온라인 모니터링단은 온라인상 불법 게시물을 검색하여 URL을 수집하고, 확인 과정을 거쳐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차단을 요청하고 있음. 이후 차단 여부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그 결과, 특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시된 마약류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1건당 평균 83.3일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마약류 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위반사항의 수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수사기관에는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마약류 불법거래나 광고에 대하여 보다 신속

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온라인 마약류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적인 마약류 광고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위반사항 확인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항·제2항 신설).
 -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9조제1항 제5호의2 신설).
-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 마약류 광고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식약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식약처장은 모니터링 또는 통보 결과 현행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사항의 수정·삭제 등을 요청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4조의2제3항·제4항 신설).
- 식약처장은 불법 마약류 광고 모니터링 및 통보 결과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고, 추가적인 범죄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제5항·제6항 신설).

- 식약처장의 모니터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별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7항 및 제51조의8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4조의2(마약류 불법광고 등 모니터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1. 제3조제12호에 해당하는 행위 2. 제14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광고하는 행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위반사항 확인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

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사항의 수정·삭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받은 통보 결과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

제28조(마약류의 소매) ① ~ ③ (생략)

④ 마약류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처방전을 발행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하거나 「정보

스 제공자등의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받은 통보 결과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추가적인 범죄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모니터링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의 범위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8조(마약류의 소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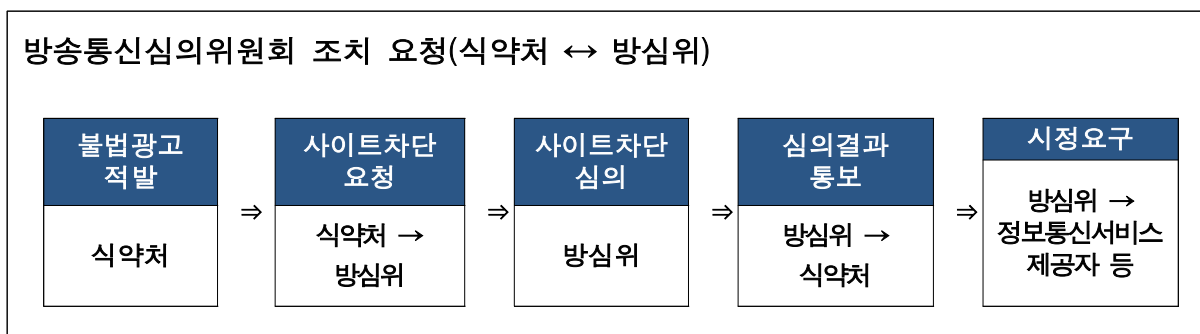
-----정보통신

<u>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u>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법률 제2021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1조의8(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u>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u>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신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신설> 6. ~ 10. (생략) ② (생략)	<u>망</u>----- ----- ----- ----- -----. 1. 2.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21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1조의8(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1. 제14조의2제7항 전단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69조(과태료)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5년 2월 7일	

나. 검토의견

- 최근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하여 불법적인 마약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식약처는 마약류 온라인 모니터링단을 통해 불법 광고 게시물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고 함)로 차단을 요청하고, 방심위에서 이를 심의하여 최종적인 차단 여부를 결정함. 이후 방심위는 식약처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시정요구를 하게 됨.

< 온라인 불법 마약류 광고 적발 시 후속절차 >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불법 게시물 차단이 신속성이 저해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¹⁾,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불법 온라인 마약류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사항의 수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직접 요청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를 의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마약류 불법 거래 차단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특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시된 마약류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1건당 평균 83.3일이 소요되고 있음.

□ 개정안과 같이 식약처가 방심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마약류 광고의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할 경우, 방심위의 심의 절차와 통보 과정 등이 생략되어 게시물 차단 등의 후속 조치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음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먼저,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불법 마약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사항의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직접 요청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데, 이는 식약처와 방심위 간 업무 중복을 유발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방송·통신 분야의 독립기구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동 법 제21조제3호·제4호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마약류 광고를 심의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시정요구’하는 것은 방심위의 직무 범위에 속함²⁾.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행정권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헌법정신 등을 고려할 때, 정부부처인 식약처가 아니라 합의제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에서 내용심의를 일원화하여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참고로, 정보통신망에서 마약류 관련 불법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24.11.26.)되었고, 최근 본회의에서 가결(24.12.26.)됨에 따라 시행 예정인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³⁾.

□ 다음으로, 안 제14조의2제2항은 식약처장이 모니터링 결과 위반사항 확인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데, 위반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범위나 내용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자료제출 의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517호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u>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u>

범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광범위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업계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등은 제외하여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마약류 불법 거래나 광고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함.
- (방송통신위원회) 개정안 제14조제2항·제3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의무와 불법 광고행위 적발 시 통보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자료의 범위와 통보방식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개정안 제14조제4항에서 방심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식약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충돌할 우려가 있고, 방송·통신 내용심의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정부가 아닌 민간기구의 성격을 지닌 방심위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망으로 유통되는 불법 마약류 매매 및 광고를 포함한 불법·유해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현재 합의제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결정하는 등 제반 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내용규제 영역에서는 정보의 표현 형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맥락, 사회통념에 대한 위해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수적인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방심위와 식약처간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이중규제 및 규제 불균형으로 이용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종적인 불법성 판단 주체는 내용심의 전문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안이유로 제시한 방심위 시정요구 조치 지연의 문제는, 전담인력 충원(예산 확충), 전자심의 도입(「방통위법」 개정), 기관간 시스템 연계(업무협력) 등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보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불법 마약류 광고의 모니터링 주체는 식약처장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불법행위 발견 시 통보의무만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개정안 제14조의2제2항에서 모니터링에 관하여 광범위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행정행위로서 비례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이고, 제14조의2제4항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위반사항의 일부 수정이 어려우므로 “삭제 조치”로 문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실무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자료제출 부담을 가중할 수 있으므로 자료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업 정보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플랫폼을 통해 노출되는 정보가 방대함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판매자의 표시·광고 위반사항 전부를 식약처에 통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즉시 통보 대신 게시물 차단 등으로 자율시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4